의정활동보고서

제236회 임시회(2009. 10. 9 ~ 10. 19)



경상북도의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풍요로운 시기에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쌀소비 촉진 홍보활동과 도청이전지 비교시찰, 한우의 생산성 증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준비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 자료제출과 설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금융위기극복과 고용안정, 수출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세계에서 앞선 높은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서민경제는 고용불안과 판매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안정 대책은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월동기에 서민들의 생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도정질문, 각종 안건처리와 의원 연수회 등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그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찬 감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정이 도민들로부

터 엄숙히 평가받고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Ⅰ. 개　　황 ····· 4

Ⅱ. 의사일정 ····· 6

Ⅲ. 의안처리 ····· 12

Ⅳ. 민원처리 ····· 13

Ⅴ. 본회의 보고사항 ····· 15

Ⅵ. 도정질문 ····· 21

□ 1차 본회의(김숙향・권인찬 의원) ····· 21

□ 2차 본회의(박노욱・박순열・장병익 의원) ····· 32

Ⅶ. 5분 자유발언 ····· 52

□ 박기진・김지수・채옥주・이종원 의원 ····· 52

부　　록

□ 조례안 ····· 62

□ 결의안 ····· 91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36회 임시회는 2009년 10월 9일 11:00 개회하여 10월 19일까지 11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21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9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3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숙향 의원, 권인찬 의원)을 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노욱 의원, 박순열 의원, 장병익 의원)을 하고 산회하였다.

휴회기간인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박기진 의원, 김지수 의원, 채옥주 의원, 이종원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경관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비롯,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36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에는 총 7명의 의원이 선임된 가운데 위원장에 김영기 의원, 부위원장에 최윤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10년 6월 30일까지 경상북도와 대구·부산·울산·경남, 호남과 충청 남부권을 아우르는 동남권 허브공항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리고 나규택 위원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영학 의원이, 신규 위원에는 김지수 의원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시책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2010년도 예산 심의자료 수집을 위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7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다.

한편, 임시회 폐회 후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도의원, 의회사무처 간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키워드 창의적 리더십”(조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이해”(손재권 경북선관위 사무국장)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과 의원상호간 유대강화를 위한 의원연수회(2009. 10. 19 ~ 20)를 개최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9-11호(2009년 9월 28일)

라. 집회일시 : 2009년 10월 9일(금)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9년 10월 9일 ~ 10월 19일(11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3회(누계 84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환경	농수산	통상문화	건설소방	특 위	
									예결	기타
235회까지	687	39	106	99	99	90	89	102	47	16
236회	21	1	4	3	3	3	4	3		
누 계	708	40	110	102	102	93	93	105	47	16

※ 제8대 의회 누계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9(금) 11:00 (제1차)	▢ 개 회 식 ▢ 안건처리 1. 제23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숙향 의원(비례대표) ○ 교육환경위원회 권인찬 의원(안동시)	
10.12(월) 11:00 (제2차)	▢ 안건처리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농수산위원회 박노욱 의원(봉화군) ○ 통상문화위원회 박순열 의원(청도군) ○ 건설소방위원회 장병익 의원(군위군)	
10.19(월) 11:00 (제3차)	▢ 5분 자유발언 ○ 농수산위원회 박기진 의원(성주군) ○ 교육환경위원회 김지수 의원(성주군) ○ 교육환경위원회 채옥주 의원(비례대표) ○ 농수산위원회 이종원 의원(상주시) ▢ 안건처리 1.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19(월) 11:00 (제3차)	3.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경상북도 경관 조례안	수정가결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7.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8.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1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보고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9(월) 10:00 (제1차)	▢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제237회 정기회 회기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2(화) 16:00 (제1차)	▢ 안건심사 ○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13 ~ 10.15 (3일)	▢ 현지확인 ○ 의정활동·지역경제활성화 비교 견학 - 재래시장, 공업단지 등(경남, 전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2(화) 16:00 (제1차)	▢ 안건심사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15 ~ 10.16 (2일)	▢ 현지확인 ○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청도) ○ 대동시온재활원(경산) ○ 주민숙원사업장(영천지역자활센터)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2(화) 16:00 (제1차)	▢ 안건심사 ○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2009년도 임대형 민자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보고	교육청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5 ~ 10.16 (2일)	▢ 현지확인 ○ 환경해양관련 현장 비교 시찰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2(화) 16:00 (제1차)	▢ 안건심사 ○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14 ~ 10.15 (2일)	▢ 현지확인 ○ 산지유통센터(성주) ○ 잠사곤충사업장 이전지(상주) ○ 풍기인삼시험장(영주) ○ 찰옥수수작목반, 능금농협음료가공공장(군위)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2(화) 16:00 (제1차)	▢ 안건심사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14 ~ 10.16 (3일)	▢ 현지확인 ○ 타시도 문화관광산업 개발현장 비교시찰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10.12(화) 15:30 (제1차)	▢ 안건심사 ○ 경상북도 경관 조례안 ○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15 ~ 10.16 (2일)	▢ 현지확인 ○ 낙동강살리기 사업추진 현장(안동) ○ 안동 소방서(수난구조대) ○ 장군-마시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군위)	

Ⅲ. 의안처리

※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86 (354)	85 (349)	67 (282)	18 (62)	(4)	(1)	(1)	1 (4)	
조례안	소 계	55 (211)	54 (207)	39 (160)	15 (43)	(3)	(1)	(1)	1 (3)	
	의회 제안	13 (54)	13 (52)	10 (42)	3 (10)				(2)	
	도지사 제출	32 (118)	32 (117)	21 (88)	11 (26)	(2)	(1)	(1)		
	교육감 제출	10 (39)	9 (38)	8 (30)	1 (7)	(1)			1 (1)	
규 칙 안		(4)	(4)	(3)	(1)					
예산·결산		6 (30)	6 (30)	3 (13)	3 (17)					
동의·승인		6 (35)	6 (34)	6 (34)					(1)	
건 의 안		1 (5)	1 (5)	1 (5)						
결 의 안		5 (20)	5 (20)	5 (18)	(1)	(1)				
기 타 안		13 (49)	13 (49)	13 (49)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4건)

○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07. 3.14상정유보)

○ 경상북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 6.12심사유보)

○ 경상북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07.11. 5상정유보)

○ 경상북도난치병 학생 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환경위원회-'09. 2.12심사유보)

Ⅳ. 민원처리

1. 청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1		1	1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6 (97)	1 (6)	(9)	(6)	5 (44)	(4)	(2)	(7)	(5)	(14)
의 회 운 영	(3)	(1)								(2)
기 획 경 제	(16)			(5)	(3)		(1)			(7)
행 정 보건복지	1 (12)	1 (5)	(5)							(2)
교 육 환 경	(9)					(4)		(5)		
농수산	(7)							(1)	(5)	(1)
통 상 문 화	(7)		(4)	(1)			(1)	(1)		
건 설 소 방	5 (40)				5 (39)					(1)
특 별 위원회	(3)				(2)					(1)

※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6 (97)	6 (97)				
의회운영	(3)	(3)				
기획경제	(16)	(16)				
행 정 보건복지	1 (12)	1 (12)				
교육환경	(9)	(9)				
농 수 산	(7)	(7)				
통상문화	(7)	(7)				
건설소방	5 (40)	5 (40)				
특별위원회	(3)	(3)				

※ ( )내는 제8대 의회 실적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5, 결의안 1)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9. 9. 29)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 획 경 제 (2009. 9. 30)
경상북도지사 (2009. 9. 29)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 육 환 경 (2009. 9. 30)
경상북도지사 (2009. 9. 29)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 수 산 (2009. 9. 30)
경상북도지사 (2009. 9. 29)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 수 산 (2009. 9. 30)
경상북도지사 (2009. 9. 29)	경상북도 경관 조례안	건 설 소 방 (2009. 9. 30)
위 원 회 (2009. 10. 19)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회 운 영 (2009. 10. 19)

2. 조례공포 사항(9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9.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9. 21 (제3117호)
2009.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9. 9. 28 (제3118호)
2009. 9. 8	경상북도 지 사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09. 9. 28 (제3119호)
2009.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9. 28 (제3120호)
2009.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9. 28 (제3121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9.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9. 28 (제3122호)
2009.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9. 28 (제3123호)
2009. 9. 8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9. 28 (제3124호)
2009. 7. 3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 7. 23 (제3116호)

3. 의회관련 사항

○ **故 나규택 의원『경북도의회葬』거행**

- 일 시 : 2009. 9. 14(월) 10:00 ~ 11:00
- 장 소 : 경상북도의회 전정
- 참 석 : 이상천 의장 및 도의원, 경상북도지사 등 300여명

4. 의원신분 변동사항

선 거 구	성 명	변 동 내 역	비 고
고령군 제2선거구	나 규 택	사 망 (2009. 9. 11)	

5.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도청이전 지원특별 위 원 회	2009. 9.21 ~ 9.22	충청남도 전라남도	○도청이전 관련 충남·전남도청 현지확인 - 신도시 건설 관련 자료수집 및 현황 청취 - 도청이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위원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농 수 산 위 원 회	2009.10. 1 (목)	경 부 고속도로 북 대 구 요 금 소	○추석명절 맞이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 - 목적 :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경북쌀 인지도 제고 및 관심 유발 - 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 주최 : 경상북도 - 인원 : 50명 ※ 김영만 위원장 등 9명 참여

6. 기타 의정활동 사항

○ **경도일보 창립 1주년 기념식**

- 일 시 : 2009. 9. 9(수), 19:00
- 장 소 : 경주 조선온천호텔
- 참 석 : 이상효 부의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정사례 선정심사위원 위촉식**

- 일 시 : 2009. 9. 11(금), 11:30
- 장 소 : 서울 프라자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9 경북민속문화의 해 민속축제 한마당**

- 일 시 : 2009. 9. 11(금), 14:00
- 장 소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백결공연장
- 참 석 : 이상효 부의장

○ **지식경제자유구역연구모임 타시도 벤치마킹**

- 기 간 : 2009. 9. 14(월) ~ 9. 16(수), 3일간
- 장 소 : 제주도특별자치도
- 참 석 : 이우경 의원(회장), 도의원

○ 경상북도 문화상 심사위원회

- 일 시 : 2009. 9. 16(수), 14: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이재철 통상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도의원

○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개막식

- 일 시 : 2009. 9. 18(금), 11:00
- 장 소 : 구미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개장식

- 일 시 : 2009. 9. 18(금), 15:30
- 장 소 : 포항 영일만항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제20차 JC특우회 우정의 날

- 일 시 : 2009. 9. 20(일), 15:00
- 장 소 : 상주실내체육관
- 참 석: 김응규 부의장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북선수단 출정식

- 일 시 : 2009. 9. 21(월), 10:00
- 장 소 : 도청 전정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장학회 이사회

- 일 시 : 2009. 9. 21(월), 11:00
- 장 소 : 경북학숙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 총회 만찬

- 일 시 : 2009. 9. 22(화), 18:30
- 장 소 : 엑스코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제34차 민방위대 창설 34주년 기념식

- 일 시 : 2009. 9. 22(화), 10:30
- 장 소 : 상주문화회관
- 참 석: 김응규 부의장

○ 수도권기업 CEO 초청 팸투어 환영만찬

- 일 시 : 2009. 9. 22(화), 18:30
- 장 소 : 포항 포스코 국제관
- 참 석 :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

○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 이사회

- 일 시 : 2009. 9. 23(수), 16:00
- 장 소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회의실
- 참 석: 이상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2009 지역순회 척수장애인 재활 세미나

- 일 시 : 2009. 9. 25(금), 14:00
- 장 소 : 구미자연환경연수원
- 참 석: 김응규 부의장

○ 제2회 경북식품박람회

- 일 시 : 2009. 9. 26(토), 16:00
- 장 소 : 영천 금호강 둔치
- 참 석 : 이상효 부의장

○ 제36회 관광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09. 9. 28(월), 10:3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효 부의장,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 제1회 대구경북로컬푸드연구회 정책심포지움

- 일 시 : 2009. 9. 28(월) 15:00
- 장 소 :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김영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지정 토론자), 도의원

○ 정책연구회 소위원회 회의개최 및 현장확인

- 일 시 : 2009. 9. 28(월) 13:10 ~ 14:10
- 장 소 :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회의실
- 참 석: 손진영 위원장, 도의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9월 임시회

- 일 시 : 2009. 9. 29(화), 14:00
- 장 소 : 울산광역시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낙동강 성공기원 범도민 결의대회

- 일 시 : 2009. 9. 30(수), 15:00 ~ 18:00
- 장 소 : 예천군 한천생활체육공원
- 참 석 : 송필각 경제 및 4대강살리기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 제90회 전국체전 경상북도선수단 필승 결의대회

- 일 시 : 2009. 10. 6(화), 11:0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 경북종합예술제 개막식, 경북문화상 시상식

- 일 시 : 2009. 10. 8(목), 18:00
- 장 소 : 의성문화체육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한혜련 통상문화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Ⅵ. 도정질문

□ 2009년 10월 9일(금) 제23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숙향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인 지역 노동현안 대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7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투자유치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전망 역시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 일자리를 잃거나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노사간 갈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오롱 구미공장 노동자들은 5년째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합섬의 경우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지 오래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노동자들을 직장폐쇄라는 이름으로 길거리로 내몬 포항의 DKC,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연이어 정리해고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내몬 진방스틸, 경주재활용선별장, 상주미화, 경북과학대 노동자들은 이번 추석을 길거리와 천막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노동관련 사무가 국가사무라는 도식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도정의 목표이고, 이를 위해 투자유치, 공단조성 등 수많은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서 보여지 듯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도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는 것이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업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리해고와 기업부도, 노사갈등으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도민의 민생문제를 살피는 것은 일자리 7만개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만큼이나 주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께서는 지역노동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접근해 나갈 계획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2008년 12월 30일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진 등 포항 권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관련 MOU를 체결했으며, 지금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절차를 거쳐 2010년부터 통합운영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상수도를 비롯한 물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물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상수도에 대한 민영화 우려가 불식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MOU 체결로 지방상수도가 민영화되거나 민간위탁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다시 한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이 예상되는 지방상수도에 대한 민간위탁은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되, 운영권을 위탁한다는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던 운영권의 포기를 전제로 추진될 경우 지역민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체계로 개편될 것이며, 물값 폭등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 우려는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수도를 민영화했거나 민간위탁 했던 필리핀의 경우에는 수돗물 값이 무려 700%가 인상되었고, 시민들의 폭동에 가까운 저항으로 민간기업이 철수하면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으며, 프랑스,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민영화를 폐기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민간위탁 1호라고 불리우는 논산시 역시 물 값 부담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물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재화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재화의 관리를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도민의 기본권을 도와 시·군이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맡긴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통합운영 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수순 밟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물 민영화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상수관 개선을 위한 경상북도의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포항시에만 20년이 넘는 노후상수관이 840km에 이르는 등 전체 상수관의 절반 가까이가 20년이 넘는 노후관이란 사실입니다. 20년 넘는 노후관만 교체하여도 수돗물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은 크게 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통합운영보다 더 중요한 당면사업이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교체되지 않고 있는 노후상수관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노후상수관 개선을 위해 지사께서는 어떠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는 정규 공무원 수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긴 하나 호봉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수 감소 등의 이유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 보장되어 있는 정년은 지극히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조리원들의 경우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방학기간에는 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우 낮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정비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구내용 중에는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도 교육감 소속 직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 수립과 조례제정 등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제도적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라 할지라도 정년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근속에 대한 호봉이 인정되어야 하며, 비정규직명별로 근무일수를 다르게 정하여 보수를 책정할 게 아니라, 보수책정 기준만큼은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하루빨리 관련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리원들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과 보수지급 근무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학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조리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70% 정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조리원들의 보수지급 근무일수를 30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의 검토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와 도 교육청에 대한 공통질문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문입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므로 학교를 짓게 됩니다. 학교건물 건축비는 도 교육청이 부담하지만, 학교용지는 우리 경상북도와 도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4항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0년 2월 28일 이후 개발사업분부터 부과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우리 도는 2008년도말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 학교가 19개교였고, 이에 대한 557억여 원의 학교용지부담 비용을 교육비특별회계로만 집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도의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278억여 원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도 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78억여 원을 추가집행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1995년 제정되어 2000년 1월 28일 1차 개정 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대해, 관련조례를 올 들어서야 제출하고, 지난 6월 11일에야 제정·공포 했습니다.

법률에서 개발사업 등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음에도 조례제정 등 후속조치를 게을리 하여 이제야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도 교육청 역시 수년째 조례 미제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점검하여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278억여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했다는 것은 상식

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와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중 도 부담분 278억여 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각각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은 보충질의 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09년 10월 9일(금) 제23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권인찬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의 나아갈 방향과 당면과제 해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올바른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에다 높은 물가고로 여기저기에서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농민들은 인건비도 건지지 못해 적자를 면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경북의 실업자 수는 약 3만 9000여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6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조기집행 방침은 상반기에 퍼내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내년도 전체 SOC 사업예산 중 30%를 투입할 예정이어서 다른 SOC 사업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데다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 추진사업이 중단 내지 연장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하반기 재정 운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업무 추진을 위해 새경북기획단, 경제자유구역청, 독도수호대책팀, 낙동강사업추진단, 낙동강사업행정지원단, FTA농축산대책과, 인재양성과, 관광산업국, 도청이전추진단 등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정원 내에서 각 부서로부터 인력을 차출하여 신설부서에 투입하다 보면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하반기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도 신청사업의 상당

수가 삭감 내지 미반영 되었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에 200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14개 세부사업 중 계속사업인 국립백두대간 고산 수목원 조성사업과 테라피 단지 조성사업만 제외하고는 거의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국비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데다가 경상북도의 재정규모는 타 광역시·도 평균에 비해 2280억 원이 적으며, 자체수입은 7672억 원이 적은 반면, 의존재원은 8723억 원이 더 많아 결국 자체 재원조달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게다가 금년도 정부의 재정적자가 51조 원이나 되는데다가 내년 세수가 11조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국비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잇따라 서울을 방문하시고 부지사와 간부직원들을 상주시켜 예산확보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시·도가 엇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 지역 출신인 것만 믿고 느긋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누가 더 발품을 팔고 정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성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인 이웃 대구광역시는 수립된 23개 사업이 아예 빠진 전례가 있는 만큼 도지사께서는 세심하고도 치밀하게 예산확보 전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믿고 맡겨 준 300만 도민들은 도지사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들을 추진을 못하게 될 경우 고용창출에 차질이 빚어져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쳐서 서민경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 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지방세수 조차 제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국비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도청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정치 및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여러 자치단체에서 통합논의가 각 지자체 별로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북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을 27년이라는 오랜 장정 끝에 안동·예천으로 결정하고 현재 설정된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행정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통합을 주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체제 개편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흘러가서 대세로 이어진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청 이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결국 경상북도는 먼저 도청이전을 했던 타 시·도와 달리 인센티브도 받지 못할뿐더러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발전도 상대적으로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정부에 도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요청했을 때 다소 어렵다는 유보적인 답변이 지난 6월 초에 언론을 통해서 일부 흘러 나왔는데다가 지난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축비에 국비지원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통폐합을 요구해 온다면 지사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계획대로 도청이전이 추진된다면 이전에 따른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거점대학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청이전 소재지내에는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립대학이 있습니다. 당초 설립할 때와는 달리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학교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하게 될 경우 경북도립대학은 도청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고등 교육기관으로서 경상북도의 위상과 면모를 가름하는 여러 요소들 중,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립대학 발전을 결코 등한시 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는 변화를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과 함께 도립대학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학령인구 40만 시대에 대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학령인구의 부족은 결국 2~3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에 4년제 대학으로 집중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행 2년제 대학 체제로는 더 이상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신도청 이전과 함께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북도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시·군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수록 공직자의 반듯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도지사의 임기 말 현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횡령과 뇌물수수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몸에 베어 왔기 때문입니까?

포항시에서는 3억 50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칠곡에서는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봉화에서는 태양광시설사업 업자와 공무원들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금년 초만 해도 1~2월 사이에 포항, 상주, 고령 등지에서 7명의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부자 경북 만들기 사업'은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부자 마을 100곳을 조성해 5년 계획으로 1천 5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부자 경북 만들기'달성을 위해 농업 관련 4대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TF팀을 꾸릴 정도로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서는 마을 이장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응모하여 보조금까지 횡령하여 총 12억 원에 해당하는 농산물 유통시설과 대지를 자신의

소유로 권리 이전하는 등 재산 증식에 활용하였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눈먼 돈입니까?

비록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비리이기는 하나, 전체 공직자의 신뢰와 자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청렴을 외치는 경북에서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는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과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불법·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는 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하여 일벌 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영토수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일본을 규탄하고 성토하는 성명과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7월 8일 경상북도는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간담회의 목적은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인식을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간담회가 열리기 10일 전인 6월 말에 문화재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관련 3대 핵심사업을 이미 부결 내지 유보시킨 상태였습니다.

독도 방파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용역조사조차 하지 못 했으며, 독도체험장과 독도관리사무소는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도 망양정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사업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유보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간담회 초청 자리에서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해야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독도 3대 추진사업에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독도영토 수호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독도개발사업은 이미 국민정서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지난해에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가 의결하여 사업비도 확정을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도의 명예를 걸고 국가영토 수호차원에서 추진하던 독도수호 사업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격려는 받지 못할지언정 관련예산 삭감 내지 유보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과 같이 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는 일본보다 안이한 대처에 능사가 난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위원회에 소아병적인 태도와 사고에 도의원이기에 앞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지부진한 독도사업 예산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제 빈껍데기만 남아 있는 독도영토수호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겨울수록 인고의 시간과 애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의 반듯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애정을 갖고 정성을 다한다면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소망을 이루리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10월 12일(월) 제23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노욱 의원(농수산위원회) ◎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노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업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농업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농업의 필수인 각종 생산요소의 가격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우리의 농촌은 암담하고도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명산업인 농업부문의 적정한 예산확보와 집행은 농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경북도는 그동안 누누이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어느 다른 시·도보다 농업지킴이 역할을 자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최근 3년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도전체 예산에 대비하여 당초 농업분야 예산비율을 보면 2007년 전체예산의 13.76%, 2008년 전체예산의 13.38%, 2009년 전체예산의 12.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중이 오히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추경예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2.37%였으나 1회 추경에서 12.28%,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전체예산의 11.71%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SOC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조달 때문에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비율이 2007년 전체 균특회계 예

산 6090억 8500만 원 중 35.5%이던 것이 2008년에 와서는 30.4%, 그리고 2009년에는 27.7%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농도 경북이 오히려 도내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농업이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경북도의 농업분야 예산이 낮아지는 경시현상에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농업예산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농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육성정책 없이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식량주권의 산실인 농업을 경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갈 것이며, 이에 도차원에서 보다 적극 나서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진정으로 경북농업을 살리고 부자농업으로 이끌어 가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의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내 쌀값 안정 및 쌀 소비촉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께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북의 들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수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농심은 불편하다 못해 깊은 한숨과 탄식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유가, 곡물가,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농가부담은 한없이 늘어났고 설상가상으로 현재 전국적인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값 폭락은 농민들의 마음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장에 나가보면 땀 흘려 일궈온 1년 농사의 수확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생종 쌀 수확과 관련한 조사결과에서 작년대비 많게는 20% 이상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쌀 재고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수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여러 정치적 연유로 인하여 대북 쌀 지원까지 차단되어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수확기 쌀값 보장에 어려움이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전국 쌀 재고량은 26만 3000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14만 1000톤보다 86.5%나 증가하였으며, 경북도내 쌀 재고량도 8월말 현재 2만 4000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 1000톤이나 많아 84.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북지역의 쌀값은 어떠합니까? 지역별 산지 쌀 판매가격은 경북도가 20kg에 3만 6874원으로 전년대비 8.4%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폭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충남 11.9%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큽니다.

농협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부터 조생종 쌀 수매에 나선 서안동농협은 40kg 기준 4만 6000원, 구미의 선산농협은 4만 5000원에 매입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농협 RPC도 4만 5000원선에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쌀 수확기 농협 수매가가 5만 6000원 내지 5만 7000원선이었던 상황에 비해 최소 1만 원 이상 하락한 것입니다.

이 상태로 쌀값 폭락이 계속되면 경북의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에 경북도 차원의 획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하여 쌀 소비촉진과 더불어 공공비축미 처리의 근본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하여 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쌀 소비촉진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홍보위주 시책일 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시책이 적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촉진과 관련한 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국수 급식을 위해 설명

회, 시식회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급식 실적은 올해3월부터 7월까지 도내 93개교에 쌀국수 10톤을 공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경북도에서는 2010년부터 학교별 연간 20회 이상 쌀국수 급식으로 1100톤 이상 공급을 위한 시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도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쌀국수 학교급식 확대를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쌀 소비촉진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범용 CCTV 지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여성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시설 및 국도상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과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범죄예방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군단위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지역의 농산물 절도는 물론 가축도난까지 빈번하게 벌어지는 마당에 지역주민들의 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커서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정부와 도차원의 예산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CCTV를 설치할 때 는 전국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과할 뿐만 아니라 CCTV가 설치된 뒤의 운영비용도 모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 8월말 현재 전국의 CCTV 설치현황은 총 1만 6563대이며 경북도가 1345대로 전국에서 경기, 서울, 인천, 제주 다음으로 설치율이 높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전년대비 42.3%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각 지자체의 재정으로 설치·운영되는 방범용 CCTV의 수요증가에 따라 그만큼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 운영비용에는 전기사용료와 회선임대료가 포함되는데 특히 회선임대료의 경우 거리, 지세 등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회선당 사용료가 월 14만 원에서 19만 8000원에 달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도내 시

군에서는 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회선이용료를 KT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시군에서는 CCTV 설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 문제로 설치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범죄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용 CCTV는 지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최고 가치추구인 생명존중과 국민재산보호를 위한 시·군의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비용을 경북도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가주택자금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 및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7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은 매우 높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농촌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열악한 농촌 환경을 변모시켜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야말로 새마을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는 농촌주민 가운데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개량하는 주택이나 귀촌, 귀농자, 무주택 농촌주민들에게 최고 4000만 원까지 연이율 3.35%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에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또한 5년간 면제되는 등 좋은 조건으로 주택개량사업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주택개량 신청량은 2007년 1350동인데 비해 배정량은 791동으로 전체의 58.6%, 2008년 2360동 신청에 986동이 배정되어 41.8%, 2009년도에는 1711동 신청에 1157동 배정되어 67.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어려운 농촌의 정주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업 예산과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주택 신축에 만 한정되어 정작 적은 비용으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이 외면 받고 있는 문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농촌주택 대부분은 열악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신축보다 는 당

장 개·보수가 시급한 주택들이 많으나 개·보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개량이 절실한 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가정이나 저소득층이 많아 4000만 원의 융자를 받더라도 자부담 능력으로는 주택신축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내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축뿐만 아니라 개·보수 자금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10월 12일(월) 제23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순열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청도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소속 박순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도청이전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8월 5일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행안부의 행정통합과 도청이전 문제가 맞물려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으나 경상북도는 행정통합과 별개로 도청이전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은 물론 유관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우고 명실상부한 '웅도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 위상에 걸맞은 개발을 위해 도청이전이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남도청과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들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관련 총사업비 4073억 원 중 국비확보 계획이 845억 원이고 나머지 3228억 원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 본청 및 도의회청사 건립비로 국비 100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향후 국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열악한 경상북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 4073억 원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 국비예산 확보전략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청이전 신도시는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된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동반이전 역시 중요합니다만 경북도가 지난 8월 5일 발표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기본구상용역'에 따르면 경상북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유관기관 186개 중 1차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73개 기관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합니다.

대구·경북의 공동관할 기관이 91개나 되고 이들 기관들은 신도시 이전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이전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동화현상이 우려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도청이전사업은 단순히 청사만 옮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향후 우리 경북도의 100년을 선도할 사업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청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비확보 및 유관기관 유치 등에 더욱 박차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도청신도시로 인하여 도심공동화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기후조건이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의 징후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경상북도의 지구온난화 대책은 너무나 미흡하여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산림분야입니다. 산림은 생물의 보금자리는 물론 생태계 보전,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디딤돌로써 산림의 보호와 자원화가 지구온난화 대비책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체 산림면적이 70.7%로 강원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최근 5년간 6,455ha에 달하는 산지를 전용해 전국 전용면적의 12.9%를 차지하면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공장과 택지, 골프장, 도로 등으로 매년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전용되고 있고 불법적인 산지전용 사례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경북은 785건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탄소 포인트제 등 녹색성장을 외치지 말고 적어도 법의 규정을 위반함이 없이 잘 관리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산소배출과 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부문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농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부분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자연환경에 매우 의존적이나 농업인 개인이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온난화의 대응정책으로 농업분야의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학비료 사용감축 등 친환경농업 실천지원에 30.6%, 기상예보 시스템 등 통계 및 정보제공에 25%, 작목 재난지원에 16.7%, 대체에너지 개발에 13.9%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친환경농업의 실천은 기후변화 대책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5년간 도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925건에 인증농가 수는 6996호, 2008년에는 2116건에 인증농가 수

는 2만 754호에 달하고 있어 매년 평균 2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2004년도 678건에 인증농가 수는 4060호에 달하였던 것이 2008년 현재 7335건에 인증농가 수는 10만 4407호에 달해 매년 평균 8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증가율 51.9%에 크게 웃도는 상황이며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23.3%에 그치고 있어 그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보면 전남이 총 10만 1256ha로 전국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의 58.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1만 9967ha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실천면적은 전남이 32.5%로 전체 인증면적 비중 9.9%보다 크게 웃돌았으며 경북은 7.1%, 경남 7.7%, 강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지면적별 친환경 실천면적이 높다는 것을 자부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 1위인 전남과 2위인 경상북도의 격차를 볼 때 사안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출발은 우리 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추진력이 미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도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농업 및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에 따른 온난화 적응품종 개발 및 농업기반 구조개혁 등에 대한 대응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도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도 소싸움 경기장 정상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도군 면적의 10% 정도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2015년까지 총 7152억 원이 투입되며 청도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휴양 관광단지와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로서 청도군은 침체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호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도 소싸움 개장이 표류하고 있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전통 소싸움장 경기를 문화상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청도군이 독자적으로 수백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수년간 경기장건설 사업의 투자 및 관련 법률의 입법화를 추진하여 막대한 세수 창출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경제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 할 공익적 기능이 지대한 청도 소싸움장이 개장을 목전에 두고 계속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의원은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도 소싸움장 개장준비 자금지원 및 레저세 감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청도 소싸움장 개장을 위한 추가지원이나 레저세 감면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공공예산과 민간자금이 투입되고도 이렇게 오래 표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엄청난 손실이며 더 나아가 경상북도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청도 소싸움 축제는 지역관광의 메카로 우리 청도군과 경상북도의 이미지·브랜드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금번 국토해양부의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으로 관광화 특화산업의 집중육성이 이루어지는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성공적 개장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과 함께 레저세 감면 등을 통한 전폭적인 제도적 뒷받침으로 청도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더 나아가 경상북도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농어촌 소학교 통·폐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국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작업이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초·중·고 전체 1070개교 중 면단위 학교는 500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학생 부족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도내 78개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폐교된 학교는 군위 3개교, 영덕 4개교, 예천 4개교, 문경 3개교 등 주로 농어촌 지역이 두드러져 이로 인한 우리 도의 도·농간, 지역간 학교문화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교된 지역의 교육소외 및 1개면 1학교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 3월 현재 경북지역에 9개면에 초등학교가 없으며 이 중에 분교조차 없는 면이 예천군 개포면을 비롯한 5개면이며 분교는 영천시 자양면을 비롯한 다섯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 남아 있는 농민과 자녀 및 농촌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교육을 위한 이농현상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정부와 도교육청에서 통·폐합을 통한 통합학교 지원에만 관심이 있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게 되는 문제와 농산어촌에 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진 각국에서는 오히려 일정 거리 이내에는 반드시 학교를 존치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촌학교를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를 통·폐합 하는데만 몰두하니 가뜩이나 희망이 옅어지는 농민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어도 1개면 1학교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 특수교육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위성 하에 장애인 교육권을 보다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경북지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내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007년도 0.81%, 2008년도 0.88%, 2009년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4171명으로 전체

1.0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0.94%를 상회하며 경상북도의 특수교육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산하 특수학급 학생 수는 1971명에 교원 수는 434명이며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는 760명이나 특수교원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특수교육법에 의거 학생 4명 당 교사 1명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현재 경상북도의 일반 학급에 전일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유치원, 초·중·고생 무려 760명이나 되는 장애학생들은 아무런 특수교사 한 명 배치 없이 일반 학급에 배정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은 일반학급 학생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매일 학교에는 가나 공부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따돌림만 받는 실정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은 고사하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시간만 때워야 하는 지적장애 학생에게는 학교가 감옥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반학급에 배정된 특수교사의 전무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특수교사 비중은 법적 정원의 65.9%에 불과한 만큼 도교육청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장애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특수교육의 기회를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장애학생들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열악한 경상북도 특수교육의 지속적 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10월 12일(월) 제23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장병익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평소 존경하는 이상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장병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각종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호전되는 조짐은 보이지만 여전히 침체의 골은 깊고 중소 상인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유통시장 개방이후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으로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서 관련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고 지역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도 판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는 총 26개의 대형마트가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와 달리 입점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작은 공룡'으로 불리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은 33개나 성업 중에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지자체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SSM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입점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사들이 올해부터 1000㎡ 미만 SSM도 유통시장에 적극 진출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변 소규모 마켓이나 재래시장, 서점, 문구점 등 영세 소상인들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형마트들이 주유소 사업까지 진출할 계획으로 있어 자영 주유소 사업자들의 기반도 붕괴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SSM 주변 소매점 실태 조사결과 중 SSM 입점 전후 주변 소매점의 1일 평균 매출액 변동 추이를 보면 입점 전

하루 매출액이 161만 원이던 것이 입점 후 111만 원으로 평균 약 50만 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해 중소 유통업체의 30.8%가 SSM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내 대형마트 및 SSM 입점 지역의 소매업체 변동 추이도 2007년에 1만 2180개, 2009년에 1만 1961개 점포로서 경영 악화 등으로 다소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형 유통업체는 해마다 막대한 매출을 올리지만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은 극히 미미해 지역경제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도에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1조 105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는 47억 원을, SSM의 경우는 2421억 원의 매출에 54억 원을 납부하는데 그치는 등 이들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자금의 대부분이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서 고용한 직원은 올 한해 대략 5700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70%가 비정규직으로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데다 SSM으로 인해 지역 영세상인 등 생업 터전을 잃는 사람까지 감안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극히 미미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인들의 몰락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비정규직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로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잠식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대형마트와 SSM의 등록제 및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고, 이미 입지한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역 상품의 판매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토록 하는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을 수확을 앞두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멧돼지로 인한 농가 피해액만 282억여 원에 이르고 우리 도의 경우 2006년에 38억 원, 2007년에 18억여 원, 2008년에 15억여 원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통계수치가 이러하면 이보다 몇 배에 달하는 피해로 예상됩니다.

이를 작물별로 살펴보면 사과, 배 등 과일류가 45%, 벼 등 곡물류가 20%, 기타 채소류와 고구마, 감자 등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진 「프리젠테이션」)

사진에서 보 듯 야생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내려와서 농작물을 마구 파헤쳐 놓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농작물 피해보상은 2007년에 8400만 원, 2008년에 1억 7000여만 원으로 농가당 피해액의 11%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피해보상기준이 2007년도에 마련되어 그 이전에는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제 피해금액 기준으로 보상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농민들은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등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폭음기, 3중 울타리, 점멸램프 등 온갖 종류의 방책을 다 써보지만 며칠이 지나 모두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피해 시설 보조금도 2006년과 2007년에 고작 1억 8000만 원 정도로 각 시·군별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농가별 자부담 40%를 제하면 실제 혜택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피해 방지시설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금액 15억여 원 중 멧돼지가 10억여 원, 고라니가 2억 3000만여 원, 까치가 2억 1000여만 원의 피해를 끼쳐 이 3종

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해 야생동물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주위에 먹이는 풍부한 반면, 먹이사슬의 윗단계인 늑대 등 천적이 사라지기 때문인데 도내의 최근 2년간 야생동물 개체수를 보아도 100ha당 멧돼지는 2.8마리에서 3.5마리로, 고라니는 6.7마리에서 7.6마리로 서식밀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적이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태를 보아도 2006년에는 8400여 마리, 2007년에는 1만 3000여 마리, 2008년에 1만여 마리를 포획하였으나 허가 개체수 대비 포획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등이 대부분 야간에 활동하며 피해를 입히는 반면, 총기 사용 제한으로 인해 야간 포획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전 시·군으로 확대·보강하고, 시·군을 큰 권역별로 묶어 수렵장 설정을 적극 유도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에 위치하고 있는 인각사 복원 정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각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의 말사로서 서기 642년 신라 선덕왕 11년에 의상 대사께서 창건하셨으며,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저자인 보각국사 일연(一然) 스님이 말년에 주지로 계시면서 삼국유사를 비롯한 불교서적 100여 권을 저술하였던 일세의 명찰로서 아름다운 화산(華山)의 기품 있는 자태가 상상의 동물 기린(麒麟)의 뿔을 닮았다 해서 인각사(麟角寺)라는 신비로운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각사의 문화재 중 보물 제428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각국사탑 및 비명은 일연 스님이 열반에 들자 나라에서 보각(普覺)이라는 시호와 함께 당대의 문장가인 민지(閔漬)에게 비문을 짓게 하고 글씨는 서성(書聖)으로 일컬어지는 왕희지(王羲之)의 유려한 횡서를 집자(集字)해 새기도록 한 것으로써 임

진왜란 때 크게 훼손되어 현재는 밑동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인각사지는 사적 제374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이 밖에도 도의 지방유형문화재 1점과 문화재 자료 2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절터에 5차 유물 발굴 과정에서 청동정병을 비롯한 9세기 무렵 통일신라시대 불교공양구들이 다량 출토되고 있으며, 그 하나 하나가 최소 보물급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 절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2002년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을 놓고 봐도 인각사가 통일신라시대에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진 사찰이었나를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번창한 시기가 있었음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번듯한 법당 하나 없이 산골의 초라한 절집으로 방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사찰을 예전 모습으로 중창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의 일환인 극락전 중건 사업에 최소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도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내년도 국비가 50%밖에 확보되지 않아 극락전 중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만 해놓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지사께서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 중앙에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의 고장인 군위를 전국에 알리고 또한 인각사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찰 복원사업과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들을 건립하고, 나아가 템플스테이 등 체험학습시설도 갖추어 향후 역사문화유적지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도내의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이농현상으로 취약아동 숫자가 줄어들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시골학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82년부터 조사된 경북도내의 폐교수를 보면 총 608개교로써 대구 인근의 고령, 성주, 칠곡 등에 비해 북부권과 동해안권의 시·군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폐교활용 현황을 보면 412개소는 매각하였거나 자체 활용중이고 196개소는 관리중이며 이 가운데 140개소는 대부 중이고 56개소는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지관리 측면에서 대부를 할 경우 임차료를 받고 관리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막대한 관리비를 지출해야 하는 형편으로 2007년에는 폐교관리비가 9100만 원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1년 사이 약 55%정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폐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고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관리부실로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 지역 미관을 해치고 우범·탈선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폐교의 유형별 활용현황을 보면 매각한 359개교 중 78개교가 경작 등 농업관련 활용 등에 쓰이고 있고, 대부의 경우도 140개교 중 생산시설로 쓰이는 곳이 47개교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대부의 경우 대부자가 건물 리모델링 등을 하였을 경우 대부기간 종료 후에 규정에 위배되는 수의계약을 통한 대부를 요구하는가 하면 대부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폐교의 명도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수의 폐교가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생산공장이나 경작 등 교육과 무관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 폐교 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폐교현상 역시 우리와 사정은 비슷하나 지역특성에 맞춰 사회교육시설이나 체험교류시설 등으로 탈바꿈 하는 등 폐교 후 2년 이내에 약 80%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적 흐름상 폐교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방치된 채 낭비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폐교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해도 오래전부터 지역문화의 중심역할을 수행했음을 감안해 폐교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정서와 특성에 맞는 '폐교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폐교 활용상 나타난 문제점과 급증하는 유지관리비 지출과 관련하여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Ⅶ. 5분 자유발언

□ 2009년 10월 19일(월) 제236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박기진 의원(농수산위원회) ◎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국가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관리는 공원 내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여 인간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마저 금지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리는 반드시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여러 사회·경제적 목적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 특히 가야산은 1972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정 당시 경계 인근의 수륜면 백운리, 봉양리와 가천면 법전리 주민들은 개인소유의 농경지와 주거지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편입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37년 동안 각종 생활상의 불편과 각종 규제를 어디 한번 하소연할 데도 없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묵묵히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의원은 가야산 국립공원의 불합리한 구역 재조정 문제를 2007년도 제219회 및 금년도 제234회 도정질문에서 지적하고 문제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함은 물론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의 추진실적 및 관련자료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불합리한 구역 재정비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규정상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원칙을 깨고 이번에 5년 만에 구역 재조정이 결정되어 내년에 재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본 의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김관용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된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국립공원 해제 지침에 따르면 공원 구역 내 산재하고 있는 농경지와 주거지를 일부는 해제안에 적용되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륜면, 가천면 지역 560필지, 56만 5000㎡는 논으로서의 존속기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총량제라는 명분에 묶여 해제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구역 내 주거지에서는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화장실도 하나 마음대로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시설 및 주거시설, 농경지의 영농형태 변화 등은 엄격한 규제로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에서는 국립공원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 업무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어려움을 일일이 귀담아 듣고 소통하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국립공원 총량제 지침도 지키고 절박한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산1번지 76만㎡, 107-2번지 4만㎡,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산 1-1번지 185만㎡ 등 도유림 266만㎡ 중에서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여 주민들이 강력하게 해제 요구하는 면적 56만 5000㎡와 대체 지정함으로써 평소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유림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면서 도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생활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적의 해결책이라 확신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3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으로부터 헤어날 기회를 잃고 또 다시 10년의 기약 없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이렇듯 한 맺힌 절규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바로 우리 도민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최적 대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

록 모든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 10월 19일(월) 제236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김지수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성주 출신 김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6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신종플루 환자 급증으로 전국이 어수선하고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북도내 구미에서도 한 여중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이후 9월 말 현재 도내의 감염환자 수는 총 8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환자의 급증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리지침을 내렸으나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예산과 시설·기구·조직 면에서 볼 때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특수 전염병에 대처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는 공기로 감염되는 특성 때문에 신종플루 환자를 수용하는 공간과 일반병동 간에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음압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내 국가 격리병원 중 음압시설을 갖춘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음압시설은 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의료원 별로 신종플루 환자 수용공간을 일반병동과 격리해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환자로 북새통인 작금의 의료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방법마저도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다가 만약 조류 인플루엔자, 사스, 노르-바이러스 등 신·변종 전염병이 지금과 같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동시다발로 창궐한다면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치료공간은 물론 전염병 검사 장비와 인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

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더욱 염려하는 것은 특수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정작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전담부서와 인력은 1998년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최근의 다양한 신·변종 전염병에 대처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불과 6명의 연구진이 지나치게 넓은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각종 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염병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78종에 걸친 진단 기능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단기능은 28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관련 검사와 조사,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수진단 관련 부서를 조속히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도교육청도 특수진단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40여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기능을 강화해서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도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단 한 곳뿐입니다.

신종플루를 포함한 각종 특수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검사 기능만이라도 갖추어진 전담부서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고뇌에 찬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9년 10월 19일(월) 제236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채옥주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채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요즘 각 신문지상과 언론매체를 보면 저출산 문제가 많은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문제가 경상북도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2007년 2100명까지 달했던 출생아수가 금년 5월에는 1700명 선까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때 쌍춘년인 2006년과 황금돼지 해였던 2007년은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작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사회단체들과 협조하여 출산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출산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난 2008년 12월 정례회에서 여러 뜻있는 동료의원님들의 도움과 뜻을 모아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6조는 「도지사는 출산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아이상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을 매월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예산을 보면 출산장려금 7억 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불과할 뿐입니다.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둘째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전국이 출산대책에 머리를 싸매고 온갖 아이디어와 지원

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경상북도는 1982년 통계조사 이후 초등학생 수가 최저수준으로 감소할 만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은 지나치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8월 제22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집행부의 입맛대로 극히 일부만 시행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분명히 물은 바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집행부의 법적·재정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줄 것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도예산의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업에 대한 의지와 열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도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출산'담당 직원들의 업무분장에는 '셋째아 이상'으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둘째아 이상'이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지나치게 냉소적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팔을 걷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영양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00만 원, 영천시는 세 번째로 많은 510만 원을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모범적인 지역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수를 보냅니다.

비록 열악한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저출산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좀더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봅니다.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년 10월 19일(월) 제236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이종원 의원(농수산위원회) ◎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저녁 9시 KBS 뉴스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용 독도교과서를 만들었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잘못된 곳이 15곳으로 지적되었으니 이를 수정하여 교육하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이유로 회수하여 다시 제작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0월 12일 저녁 9시 KBS 뉴스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경상북도교육청에 알아 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

“독도 지키자”며 만든 독도교과서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보도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1.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독도 교과서는 2008년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에서 개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인정 도서로 승인하여 2009학년도부터 경상북도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0차씩 지도할 수 있도록 배부함.
2. 외교통상부(중앙부처)지적사항
   - 오류 부분 지적 : 15부분
   - 수정할 부분 : 명백한 오류 5부분은 정오표 공문 발송(2009.10.12)하였으며, 의견 검토가 필요한 10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임(대면토론 2회 및 재택 검토 22일 동안 추진 중임)
   - 기타 : 현재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서 전문가를 위촉하여 수정 보완을 위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3. 외교통상부(중앙부처)지적사항에 대한 향후대책
   - 연도나 명칭 오기 등 명백한 오류 5부분은 2009. 10. 12(월) 오전 11시 45분에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초등학교에 정오표를 발송하였으며, 학

술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외교통상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 기관의 검수를 받아 완성할 계획임.

4. 잘못된 교재를 연말까지 사용해야만 하는 사유

- 잘못된 교과서를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정오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한 후, 담당교사가 재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2009. 10. 12(월) 11시 45분 공문 발송)

.....

지난 10월 12일 도교육청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여 이상과 같은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도교육청에서 독도 지키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도교과서를 제작하여 활용한 것은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도교육청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교육으로 잘 하였다고 본 의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독도의 중요성과 올바른 2세 교육을 위한 교과서임을 감안하여 교과서안이 완성되었을 때 중앙관계부처의 심의를 받아 완벽한 교과서로 이용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둘째, KBS 방송에서 지적하기 전 2009년 4월 16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이 있었음에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면토론 및 재택검토 22일 동안 추진 중이었다고 밝힌 바와 같이 나타나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일관되는 자세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에서 10월 11일 9시에 지적한지 14시간만인 10월 12일 11시45분 시군교육청으로 정오표 공문을 보내는 기민성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의 잘못된 지적이 있었을 때 잘못된 교과서를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1분 1초라도 빨리 잘못된 부분을 고쳐 학생들이 올바른 독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당연할 것이나 시기의 적절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일한 늑장대처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셋째, 모든 학생의 교과서에 정확하게 정오표가 붙여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발언을 위하여 정오표에 의하여 정정해 보니 본 의원도 어느 부분인지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 과연 학생들에게 맡겨둔다면 틀린 교과서에 의한 독도 지키기 교육은 계속될 것입니다.

넷째, 본 의원이 지난 7월 3일 제2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울릉도 독도박물관에 비치된 울릉도 지도에 독도 표기가 빠져있음에 이의 빠른 시정을 여러 번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부득이 5분 발언을 하였던 바 교육감 이하 간부들께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였음에도 독도에 관하여 지난번 도청과 같은 안일한 대처가 재발되고 있음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독도에 관하여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5분 발언을 하는 마음 허탈한 심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진정 독도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세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독도를 지킴에 있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온 세상이 들썩 놀라게 할 만한 대외행사가 필요하겠지만, 평소에는 조용히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으로 빈틈없이 꼼꼼히 내실을 다져갈 때 독도는 진정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관계단체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5건

□ 결의안 : 1건

□ 조례안

○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경관 조례안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10월 1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정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자전거도로, 보관대 등 자전거 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도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도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자동차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복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행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제2장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 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해당 주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3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

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③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대여소 설치 등)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철도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시민단체·민간단체 등 시장·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추진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 중 정책기획관, 경제교통정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민간단체 대표
2. 자전거 부품·소재 등 기술개발 관련 대학·기업체·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3. 유관기관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자전거 관련 정책기획 및 총괄·조정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4조(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자전거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전거 시범직장·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는 때에는 통근·통학로에 대하여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안전시설, 자전거횡단도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또는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지원)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등록한 자전거나 도민자전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시민단체·민간단체·동호회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육장의 관리를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민간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시설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10월 1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 :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장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를 말한다.
4. 숙박시설 : 자연휴양림 시설 중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이용객들이 잠을 자거나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집을 말한다.
5. 어린이 :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일반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9. 단체 :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을 많이 찾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성수기와 비수기(성수기 이외의 기간)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비수기 주중에는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때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에 공고하고, 도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 ①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숙박시설은 사전 예약으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사전 예약은 사용예정일 60일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1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시설사용료는 현금(「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폰뱅킹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예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은 취소된다.

제6조(분쟁 해결) ①자연휴양림 관리기관 또는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취소가 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자에게 관리·운영자는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3.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4. 자연휴양림내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5. 자연휴양림 시설 중 숙박시설 이용자
6. 기타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상북도지사가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도내 산림생태·문화·관광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자원봉사자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및 정신병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4. 미풍양속 및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5. 야생 동·식물 등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6. 기타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사용 제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기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②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제11조(행위 제한) 자연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4. 각종 물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5. 야생 동·식물 등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각종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오손, 파괴, 이전시키는 행위
7. 기타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과태료)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자연휴양림 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조(수입금의 처리) ①자연휴양림의 수입은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은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원)		비 고
				개 인	단 체	
입장료	어 른		1인/1일	1,000	600	
	청소년		〃	600	400	
	어린이		〃	300	200	
시설사용료	주차장	경형 자동차	1일/1대	1,000		
		중·소형 자동차	〃	2,000		
		대형 자동차	〃	4,000		
	캠핑장	야 영 장	1일/1개소	2,000		
		야영데크	〃	4,000		
		오토캠핑장	〃	8,000		
	숙박시설	18㎡ 미만(3인실 이하)	1일/1동·실	35,000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18㎡ 이상 28㎡ 미만(4인실)	〃	40,000		
		28㎡ 이상 41㎡ 미만(5~6인실)	〃	55,000		
		41㎡ 이상 51㎡ 미만(7~8인실)	〃	70,000		
		51㎡ 이상 61㎡ 미만(9~10인실)	〃	85,000		
		61㎡ 이상 71㎡ 미만(11~12인실)	〃	100,000		
		71㎡ 이상 81㎡ 미만(13~14인실)	〃	120,000		
		81㎡ 이상 (15인실 이상)	〃	150,000		

※ 비고

1. 숙박시설의 면적을 산출할 때는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샤워실 등 전용객실의 모든 면적과 다락면적 및 대청마루 면적의 2분의 1만 포함한다. 다만 별도 난방시설을 갖춘 다락은 전체 면적을 숙박시설의 면적에 포함한다.
2. 발코니, 베란다, 데크, 보일러실 등은 숙박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10월 1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원유 또는 축산물가공품의 위탁검사”를 “위탁검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검사의 신청 등) 법 제12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축산물의 위탁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검사신청서에 검사시료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이하 “가축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의뢰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검사성적서(별지 제2호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성적서”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조 각호의 검사수수료는「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 따른 수수료 기준액을 적용하고, 그 밖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검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시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 개시 전 검사신청인의 반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검사를 행한 후에도 그 사용 가치가 남아 있어 검사의뢰인이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검사신청인(신고인)”을 “검사신청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의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축검사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 소, 말, 사슴, 타조	2,000	마리당
2. 돼지, 양, 기타 포유류	700	마리당
3. 닭, 오리, 기타 조류	1,000	100수 당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물검사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적용대상)(생 략)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검사 2.~3. 생략 4.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 또는 축산물가공품의 위탁검사 5. 생략	제3조(적용대상)(현행과 같음) 1.「축산물가공처리법」-------- 2.~3. 생략 4. ---------- 위탁검사 5. 생략
제4조(검사의 신청 등) 법 제12조제4항 및 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위탁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검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검사시료 및 기타검사에 필요한 자료(외국어	제4조(검사의 신청 등) 법 제12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축산물의 위탁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검사신청서에 검사시료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

현 행	개 정(안)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를 첨부 하여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이하 “가축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장(이하 “가축위생시험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성적서 등의 교부)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검사성적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성적서 등의 교부) ---------- ---------- ---------- 신청인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성적서 ----------
제7조(수수료의 기준 등) ①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및 검사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수수료의 기준 등) ①제3조 각호의 검사수수료는「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 따른 수수료 기준액을 적용하고, 그 밖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검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사시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를 행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검사의뢰인이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시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 개시 전 검사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을 시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검사를 행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검사의뢰인이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안)
제10조(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제4조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검사가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신청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위생시험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신청인(신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 ---------- ---------- ---------- ---------- ----------검사신청인---------- ----------
제11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의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의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10월 1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협의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의 발생시 대처할 사항
3.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상북도 농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 축산업무 담당과장
2. 경상북도 가축위생방역기관장
3. 시·군 축산업무 담당과장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대구사무소장
5. 수의·축산관련 대학 교수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상북도본부사무국장
7.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축산관련팀장
8. 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협의회)장
9.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④ 간사는 경상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협의회 업무와 관련한 민원을 야기 시켰을 때
4.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품위손상 등 위원의 자격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 한다.

②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대책 수립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위하여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경관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9년 10월 1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경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지역 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도내 특정지역 또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2 “경관형성”이란 자연경관의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 및 경관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도지사의 경관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 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 있게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5.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성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③도지사는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관련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야간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청회 개최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도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영 제8조제7호의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 관련도서(위치도, 사업대상지 현황도면 및 사진)
2. 재원조달 방법 및 이행계획서
3. 사업비 산출근거

②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③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⑦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⑨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영 제16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동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때까

지로 한다.
③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경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⑨ 공동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6호 및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경관형성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전까지

2.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디자인 확정전까지

제1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18조제8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경관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경관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협의체 등에 출석하는 위원과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의안

○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351

제안년월일 : 2009. 10. 1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제안이유

○ 정부는 신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연구 용역”**을 추진중임

○ 최근 동남권 신국제공항 후보지 최종선정을 앞두고 경상북도와 대구,경남,울산은 접근성이 뛰어난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최적지로 지지하면서 유치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 양상을 띠고 있음

○ 부산은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가장큰 수혜자가 될 수 있음에도 가덕도가 아니면 김해공항을 확장하여 부산만의 국제공항을 건설하려고 주장함

○ 또한 수도권에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영남지역 지자체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렵사리 추진해온 신국제공항 건설유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경상북도와 대구·부산·울산·경남,호남과 충청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동남권 허브공항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신국제공항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

3. 내 용

○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추천으로 한다.

○ 위원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건설소방전문위원 으로 한다.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35회 · 제236회 임시회)

2009. 11 인쇄 / 2009. 11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5

FAX : 602-5140

<비매품>